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20395호, '24.3.19.공포, 9.20. 시행)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수행하는 자를 책임수행 기관과 지적재조사대행자로 구분하여 규정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현행화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책임수행기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통보된 지적재조사대행자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책임수행기관”라 함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말한다.
6. “대행자”라 함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제2항 중 “대행자는”을 “책임수행기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대행자에 대한”을 “책임수행기관 및 대행자의”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대행자 업무)”를 “(책임수행기관 등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행자”를 “책임수행기관과 대행자”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퇴직, 전출, 보직변경 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권한관리자는 기존 사용자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조치하여야 하고,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권한관리자는 휴면계정으로 조치된 자의 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⑤ 권한관리자는 휴면 또는 탈퇴한 사용자의 정보를 휴면·탈퇴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행자”를 “책임수행기관과 대행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적 재조사 행정시스템(이하 “시스 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업무 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 적용 하며 사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 략)</p> <p>3. <u>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 적측량대행자로 선정 고시된 자.</u></p> <p>4. (생 략)</p> <p>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 략)</p> <p><u><신 설></u></p> <p>5. “대행자”라 함은 <u>같은 법 제5</u></p>	<p>제2조(적용범위)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u>」 제4조제1항에 따라 <u>고시된 책임수행기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적소관청 에 통보된 지적재조사대행자</u></p> <p>4. (현행과 같음)</p> <p>제3조(용어정의)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책임수행기관</u>”라 함은 「<u>지 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u>」(이 하 “<u>법</u>”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u>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책임 수행기관을 말한다.</u></p> <p>6. -----</p>

조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6.·7. (생략)

제8조(사용자 교육실시) ① (생략)

② 지원단장, 추진단장 및 대행자는 사용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추진단장의 업무) 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3. (생략)
- 4. 추진단 업무담당자 및 해당 사업지구 대행자에 대한 사용자 권한 승인 및 관리

5. (생략)

제11조(대행자 업무)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6. (생략)

제13조(사용자권한 관리) ①·② (생략)

<신설>

--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 등의 업무의 일부를 ---.

7.·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제8조(사용자 교육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책임수행기관은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추진단장의 업무)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책임수행기관 및 대행자의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책임수행기관 등의 업무) 책임수행기관과 대행자---.

- 1. ~ 6.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자권한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퇴직, 전출, 보직변경 등으로

<신 설>

<신 설>

제14조(사용자번호 및 인증서 로그인) ① (생략)

② 소속이 변경되거나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인증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부여받은 GPKI로 사용하며, 로그인 후 사용자 로그인 접속내용을 인증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④ 대행자는 공공 I-PIN 등의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권한관리자는 기존 사용자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조치하여야 하고,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권한관리자는 휴면계정으로 조치된 자의 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⑤ 권한관리자는 휴면 또는 탈퇴한 사용자의 정보를 휴면·탈퇴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번호 및 인증서 로그인)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 행정안전
부-----

④ 책임수행기관과 대행자----

공인된 실명인증 방식으로 로그인 후 사업지구별 권한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⑥ (생략)

제17조(백업 및 복구) ①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멸실·손괴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백업 주기와 방법 및 범위는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백업지침에 따른다.

② (생략)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7조(백업 및 복구)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

② (현행과 같음)